

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규정

제정 2008. 03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담, 법률원조 등의 법률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운영, 권한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고문변호사 : 중소기업고문변호사로 선정된 이 회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.
2. 중소기업회원 :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회의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둔다.
- ④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,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보선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직능) 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고문변호사 선정 등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의 조직 및 관리
2. 기업회원별 고문변호사 위촉
3. 중소기업회원의 등록과 관리
4. 중소기업회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원조사업
5.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회의 집행기구 구성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6조(보고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처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고문변호사의 의무) 고문변호사는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있어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원 등) ① 위원회의 예산은 중소기업회원의 회비, 공익단체, 금융기관 등의 지원금, 기타 독지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.

제9조(위임규정) 고문변호사의 선정과 관리, 중소기업회원의 등록과 관리, 법률상담, 법률원조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08. 03. 31.)

이 규정은 2008. 3. 31.부터 시행한다.